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20

발의연월일: 2020. 12. 22.

발 의 자: 허은아 · 성일종 · 박성중

김영식 · 임이자 · 정희용

김성원・추경호・金炳旭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등 ICT 경쟁력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분야이지만, 여러 법률에서 데이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경직적인 규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기반의 조성과 인력 양성이 부진한 상황임.

또한, 디지털라이프의 확대로 데이터에 기초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 및 기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활동 산물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근간이 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데이터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데이터주체는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전송・삭제하는 행위나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변경하는 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개인데이터 주체는 데이터서비스제공자 등에 제공한 개인데이터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개인데이터의 전송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데이터주체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데이터서비스 제공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자산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데이터자산을 임치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7조).
-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자 산을 수집하고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자산보호센터를 설립하려는 자 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데이터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의 대상이되는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2. "데이터주체"란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주체를 말한다.
- 3. "개인데이터"란 개인이 처리한 데이터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4. "데이터자산"이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생성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 5.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데이터서비스"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가 이용하

게 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2장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제5조(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2.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및 분석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7조(데이터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 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데이터 주권) 데이터주체는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 권적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 •전송·삭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 제거 • 변경하는 행위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데이터주체는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데이터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데이터주권은 이양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11조(데이터서비스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데이터서비스 사업자는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데이터 이동의 요구) ① 데이터주체는 데이터서비스제공자 등에 제공한 개인데이터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개인데이터의 전송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데이터주체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 ④ 데이터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유통 · 거래 촉진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및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데이터산업의 진흥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응용
 - 2. 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
 -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 4.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 5. 기술 연구인력 · 시설 등 연구기반 마련
- 6.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간을 정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데이터서비스 제공 사업자(이하 "중소사 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데이터서비스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데이터서비스 개발사업"이 라 한다)에 중소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데이터서비스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세제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데이터자산의 임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자산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데이터자 산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 ② 수치인은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임치한 데이터자산을 내어주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치인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데이터자산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산업에서 대기업사업자와 중소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데이터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 2. 데이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표준서비스 수준계약 및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 4. 그 밖에 공정한 데이터산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9조(표준화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기술·비식별화 기술·데이터자산의 저장방식 등 보호 수준에 관한 데이터산업표준을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연구기관 및 공공기관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데이터 수집 및 비식별화 기술에 관한 표준화
 - 2. 데이터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3. 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 계 유지·강화
 - 4. 그 밖에 데이터 기술 기준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0조(데이터자산보호센터 설립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자산을 수집하고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자산보호센터를 설립하려는 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데이터산업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데이터 활 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22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및 유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 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

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에서 데이터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제4장 보칙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전송·삭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2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 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